



소 장

- 원 고 VIDAL JAYMARCK(940310-*****)
김포시 양촌읍 황금1로 136 (학운리)
송달주소: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 다동 301호(학운리, 이젠몰) (송달영수인 : 이월성)
(휴대전화: 010-9940-**** 이메일: cochn@naver.com)
- 피 고 손기영
김포시 김포한강3로 290-16 (장기동, 고창마을이니스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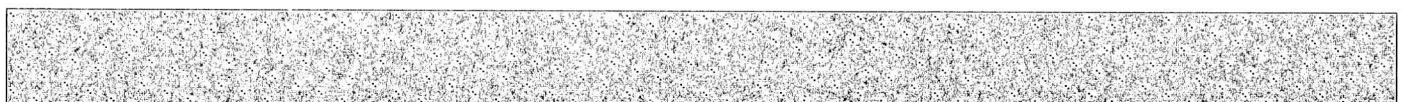
임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9,944,773원 및 위 금원중 금2,478,733원에 대하여는 2019.12.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금 7,466,040원에 대하여는 이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필리핀인으로 한국에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산호명 예준박스(사업자등록번호 815-77-00820) 제조업소 사업장에서 2016.9.8.부터 2019.12.9.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 피고는 위 기간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2,478,733원을 미지급하여 부득이 원고는 피고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시청에 동금액의 급료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국가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사과하고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지급을 거부하고 하고 있을뿐 아니라 원고가 위 기간동안 근무하면서 2016.10. 부터 퇴직월인 2019.12.까지의 국민연금 7,466,040원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여 이에 대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3. 그동안 수도 없이 피고에게 밀린 임금과 국민연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이유없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서 부득이 본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 | | |
|-----------|----------|
| 1. 갑 제1호증 | 여권사본 |
| 2. 갑 제2호증 | 퇴직금미지급내역 |
| 3. 갑 제3호증 | 연금미지급내역 |
| 4. 갑 제4호증 | 진정서 |
| 5. 갑 제5호증 | 형사처벌결과 |

첨 부 서 류

1. 전자소송동의 협약서
2. 위임인의 확인서 및 위임장
3.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2021.04.27

원고 VIDAL JAYMARCK

김포시법원 귀중

